

투자 위험 등급 5등급 [낮은 위험]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 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를 감안하여 5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이스트스프링 내일환매초단기채권증권투자신탁[채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트스프링 내일환매초단기채권증권투자신탁[채권]**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 |
|---------------------------------|--|
|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이스트스프링 내일환매초단기채권증권투자신탁[채권] |
|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주) |
| 3. 판매회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eastspring.com/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4. 작성기준일 | 2025년 04월 28일 |
|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5년 04월 30일 |
|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모집(매출) 총액] | 수익증권
[10조좌] |
|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이 집합투자기구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
|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
| 나. 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 kofia.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각 판매회사 |
|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 해당사항 없음 |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요약정보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붙임. 용어풀이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 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 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 보험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 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이 집합투자기구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정한 별도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만이 투자권유를 할 수 있습니다.
10.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

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트스프링 내일환매초단기채권증권투자신탁[채권] [펀드코드: EH636]

투자 위험 등급 5등급 [낮은 위험]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 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5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 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대부분 을 국내 채권 등에 투자하여 원본손실위험, 시장위험,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거래상대방신용 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 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이스트스프링 내일환매초단기채권증권투자신탁[채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 등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비교지수(벤치마크) : Call 100%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신탁업자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주요 운용 전략] 이 투자신탁은 채권(AA-이상), 단기사채 및 기업어음(A2-이상)(유동화포함), 양도성예금 등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또한 듀레이션을 0.3년 내외 수준을 목표로 채권, 단기사채 및 기업어음 등에 투자하여 금리 변동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 이자수익 확보전략 - AA- 등급 이상의 채권, A1 등급 이상의 기업어음 및 단기사채, 신용이 보장된 유동화자산 등의 투자를 통하여 안정적인 이자 수익 추구 - 선별적 A2 등급의 기업어음 및 단기사채 투자를 통하여 이자수익 확보 ◆ 유동성 확보전략 - 기업어음 및 단기사채 투자를 통하여 유동성 확보 및 환매 대응 - 자금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환매조건부 채권과 투자 대상 자산 간의 적절한 비중 조정 ◆ 추가수익 확보전략 - 상대가치 분석을 통한 동일 섹터 또는 만기 내에서 높은 만기수익률(YTM)을 가진 종목 선정 - 수익률 곡선(Yield Curve) 분석을 통한 롤링효과*가 큰 구간 편입을 통한 추가 수익 추구 - 환매조건부 채권(Repo*) 매도를 통하여 조달 금리보다 높은 자산 매수를 통하여 이자율 차이에 의한 초과 수익 추구 * 롤링효과 :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잔존만기가 짧아지면서 금리가 하락하고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일반적으로 장기채 금리가 단기채 금리보다 높아, 시간이 경과하여 채권 만기가 짧아질 경우, 평가금리가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 단, 금리가 상승하거나 장단기 금리차가 변화하는 등 시장 환경 변화가 생길 경우, 자본 이익 효과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 Repo :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약정된 조건에 따라 채권을 다시 매입하기로 하고 채권을 매도함으로써 만기일에 약정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단기자금 조달 수단. 환매조건부매도(Repo)를 통해 현금 조달이 가능하며, 조달된 현금으로 유동성 대응 및 유사시 채권 등 자산에 추가적인 투자 가능 ※ 투자전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채권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연간,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단위:천원)				
		판매 수수료	총 보수	판매 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보수· 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납입금액의 0.3% 이내	0.1790	0.1000	0.34	0.1790	48	67	87	130	25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없음	0.3790	0.3000	0.39	0.3790	39	79	122	213	480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납입금액의 0.15% 이내	0.1290	0.0500	0.25	0.1290	28	42	57	88	180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없음	0.2290	0.1500	0.25	0.2290	23	48	74	129	29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2 (연금저축))	없음	0.3290	0.2500	-	0.3290	34	69	106	185	41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 (퇴직연금))	없음	0.3190	0.2400	-	0.3190	33	67	103	179	405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보수·비용(판매수수료+총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A형과 C형], [A-E형과 C-E형]의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1년6개월], [약1년6개월]이나, 이는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 상기 종류 수익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종류 및 구체적인 투자비용에 대해서는 투자설명서[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주5) 총 보수 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자투자신탁의 경우 해당 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포함)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투자실적 추이 (%, 연평균 수익률)	설정 이후 1년 미만 펀드로서 해당사항 없습니다.										
운용 전문인력	구분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채권형, %)				운용 경력 년수 (년)
					집합투자 기구 수(개)	운용규모 (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책임	변 준	1977	이사	16	9,382	7.48	6.37	7.48	6.37	17.0
부책임	정세은	1986	차장	14	8,328	-	-	7.48	6.37	11.2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 가치의 보증을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를 참고 바랍니다.		
주요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시장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자산 시장 전체의 가격하락 또는 이자율 변동 등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하락 위험에 노출됩니다. 경제성장률, 환율, 금리변동 등의 요인들은 증권시장 전체에 영향을 끼쳐 개별 증권 개별 증권가격의 등락을 초래하며 이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발행자 및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보유하고 있는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을 발행한 회사 또는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증권, 단기금융상품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 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발행자의 신용등급이 낮아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지급하는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신용등급이 높은 채권에 비하여 이자율 변동시 가격 변동 폭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매입방법	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17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환매방법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2영업일(D+1)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17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

판매수수료	없음	가격을 적용. 3영업일(D+2)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판매대금을 지급
기준가	산정방법 공시장소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https://www.eastspring.com/kr)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	구 분 집합투자기구 수익자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 이자, 주식 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주) 대표번호: 02-2126-3500 / 인터넷 홈페이지 : https://www.eastspring.com/kr	
모집기간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모집, 매출 총액 10조좌
효력발생일	2025년 04월 30일	존속 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https://www.eastspring.com/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의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 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수수료 선취(A) 수수료 미징구(C) 판매 경로 온라인(E)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6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 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B) 또는 판매수수료선취형(AB)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6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 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기타	개인연금(P2)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펀드, 전문투자자 등(F)	전문투자자 또는 펀드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W)	Wrap Account 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기타에 해당하는 클래스의 가입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집합투자계약 및 투자설명서[제2부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내 가.(2) 종류별 가입자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 (<https://www.eastspring.com/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https://www.eastspring.com/kr>)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https://www.eastspring.com/kr>)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 클래스 명칭		금융투자협회 코드
이스트스프링 내일환매초단기채권증권투자신탁[채권]		EH636
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EH654
A-E	수수료선취-온라인	EH655
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EH656
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EH657
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펀드,전문투자자 등	EH658
C-P2(연금저축)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EH659
C-P2(연금저축)E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EH660
C-P(퇴직연금)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EH661
C-P(퇴직연금)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EH662
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EH663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채권형)
-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 마. 특수형태 :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서로 다른 수종의 수익증권이 발행된 투자신탁)
- 바. 고난도금융상품 해당여부 : 해당 사항 없음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 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이 투자신탁은 10조원까지 모집(판매)가 가능하며, 1조 단위로 모집(판매)합니다. 모집(판매)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판매)가 가능합니다.

주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 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및 판매됩니다.

나.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eastspring.com/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모집(매입) 또는 배정절차 및 방법: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 클래스 명칭		금융투자협회 코드
이스트스프링 내일환매초단기채권증권투자신탁[채권]		EH636
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EH654
A-E	수수료선취-온라인	EH655
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EH656
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EH657
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펀드,전문투자자 등	EH658
C-P2(연금저축)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EH659
C-P2(연금저축)E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EH660
C-P(퇴직연금)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EH661
C-P(퇴직연금)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EH662
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EH663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25.01.14	- 최초 설정
2025.04.30	- 오기 정정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사항(2025.01.01) 반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여의도동, One IFC) (대표전화 : 02-2126-3500)

※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2024.11.30 기준)

구분	성명	생년	직위	운용경력	운용경력 이력
책임	변 준	1977	이사	17.0년	-AIA생명/AIG자산운용(06.03~10.07) -KB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10.08~13.09) -한맥투자증권 채권영업본부(13.09~13.12)

					-알파에셋자산운용 채권운용팀(15.05~17.01) -우리글로벌자산운용 채권운용팀(18.05~21.06)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 채권운용팀(21.06~현재)
부책임	정세은	1986	차장	11.2년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 채권운용팀(13.09~현재)

구분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국내채권형, %)			
				집합투자 기구 수(개)	운용규모 (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책임	변 준	1977	이사	16	9,382	7.48	6.37	7.48	6.37
부책임	정세은	1986	차장	14	8,328	-	-	7.48	6.37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해당사항 없음

※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합니다.

※ 동종집합투자기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3년간 변동 내역

해당사항 없음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증권투자신탁[채권형],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이스트스프링 내일환매초단기채권증권투자신탁[채권]	
	
클래스 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클래스 A-E (수수료선취-온라인)	
클래스 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클래스 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클래스 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펀드,전문투자자 등)	
클래스 C-P2(연금저축)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클래스 C-P2(연금저축)E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클래스 C-P(퇴직연금)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클래스 C-P(퇴직연금)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클래스 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나. 종류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각 종류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6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 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B)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AB)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6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 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기타	개인연금(P2)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펀드, 전문투자자 등(F)	전문투자자 또는 펀드가 투자하는 용도 등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W)	Wrap Account 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주1) 기타에 해당하는 클래스의 가입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집합투자계약 및 [제2부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내 가.(2) 종류별 가입자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취 및 후취판매수수료는 각 클래스에서 정한 범위 이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가 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판매회사·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및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될 예정입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 등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합니다.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①	채권	60% 이상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주식관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전자증권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②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③	어음등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④	집합투자증권등	4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 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지분증권에 투자하지 않는 것에 한함)
⑤	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기준 10% 이하	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채권이나 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⑥	환매조건부매도	증권총액의 50% 이하	
⑦	증권의 대여 ^{주1)}	증권총액의 50% 이하	
⑧	증권의 차입 ^{주2)}	20% 이하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단기대출 ^{주3)} ,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4)} , 환매조건부매수 ^{주5)} 등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 제16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집합투자규약 제16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규약 제16조 제5호 내지 제8호, 제17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6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집합투자규약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해당자산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주1) 증권의 대여: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운용방법입니다.

가. 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합니다.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2) 증권의 차입: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3) 단기대출: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주4) 금융기관에의 예치: 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주5) 환매조건부매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 예외
이해관계인에 대한 단기대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동일종목투자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주식과 주식을 제외한 증권은 동일종목으로 간주)에 투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집합투자증권 투자	자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가.자산총액의 100%까지 :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나.자산총액의 30%까지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의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이하"기업어음증권"이라고 한다)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법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 제2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이내에서 법시행령 제80조 제10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집합투자기구에서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제80조제11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	

	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총수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파생상품투자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간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적용예외]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계약 제16조 제5호 내지 제8호, 제17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6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자세한 투자제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 등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합니다.

[주요 운용 전략]

이 투자신탁은 채권(AA-이상), 단기사채 및 기업어음(A2-이상)(유동화포함), 양도성예금 등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또한 듀레이션을 0.3년 내외 수준을 목표로 채권, 단기사채 및 기업어음 등에 투자하여 금리 변동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 이자수익 확보전략

- AA- 등급 이상의 채권, A1 등급 이상의 기업어음 및 단기사채, 신용이 보장된 유동화자산 등의 투자를 통하여 안정적인 이자 수익 추구
- 선별적 A2 등급의 기업어음 및 단기사채 투자를 통하여 이자수익 확보

◆ 유동성 확보전략

- 기업어음 및 단기사채 투자를 통하여 유동성 확보 및 환매 대응
- 자금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환매조건부 채권과 투자 대상 자산 간의 적절한 비중 조정

◆ 추가수익 확보전략

- 상대가치 분석을 통한 동일 섹터 또는 만기 내에서 높은 만기수익률(YTM)을 가진 종목 선정
- 수익률 곡선(Yield Curve) 분석을 통한 롤링효과*가 큰 구간 편입을 통한 추가 수익 추구
- 환매조건부 채권(Repo*) 매도를 통하여 조달 금리보다 높은 자산 매수를 통하여 이자율 차이에 의한 초과 수익 추구

* 롤링효과 :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잔존만기가 짧아지면서 금리가 하락하고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 일반적으로 장기 채 금리가 단기 채 금리보다 높아, 시간이 경과하여 채권 만기가 짧아질 경우, 평가금리가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 단, 금리가 상승하거나 장단기 금리차가 변화하는 등 시장 환경 변화가 생길 경우, 자본 이익 효과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 Repo :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약정된 조건에 따라 채권을 다시 매입하기로 하고 채권을 매도함으로써 만기일에 약정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단기자금 조달 수단. 환매조건부매도(Repo)를 통해 현금 조달이 가능하며, 조달된 현금으로 유동성 대응 및 유사시 채권 등 자산에 추가적인 투자 가능

※ 비교지수(벤치마크) : Call 100%

- Call 금리 :
금융기관 사이에 초단기로 자금을 빌려주고 받는 자금 거래를 Call이라 하며, 이때 금융기관 상호간의 단기자금 대차인 콜에 대하여 형성되는 금리
- 이 투자신탁은 듀레이션이 0.3년 내외로 짧은 단기투자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채권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을 고려하여 상기 지수를 비교지수(벤치마크)로 선정하였습니다.
- 비교지수(벤치마크) 수익률은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 홈페이지(www.eastspring.com/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성과비교 등을 위해서 위와 같은 비교지수(벤치마크)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시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위험관리

<포트폴리오 위험 관리>

이 투자신탁은 AA-등급 이상의 우량 채권과 A2-등급의 기업어음 및 단기사채 등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추구하며, 기업어음, 단기사채 및 양도성예금 등 유동성이 높은 자산에 선별적으로 투자하여 유동성 위험을 중점적으로 관리합니다. 또한 0.3년 수준의 단기 듀레이션을 목표로 펀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시장금리 변경 위험을 최소화를 추구합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로서 주된 투자대상인 채권 및 어음 등의 이자수익에 따라 투자자의 주된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아래의 투자위험은 본 자료의 작성시점 현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시장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주로 국내채권 및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함으로써 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자금시장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시장 위험으로 인하여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를 초래하여 투자신탁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자율변동 위험	채무증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발행자의 신용등급이 낮아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지급하는 채무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신용등급이 높은 채무증권에 비하여 이자율 변동시 가격 변동 폭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발행자 및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보유하고 있는 단기금융상품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증권, 단기금융상품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투자대상자산의 신용등급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및 증권시장의 거래 중단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 등으로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투자 위험	파생상품은 적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투자(노출)가 가능한 레버리지 효과 (지렛대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해외 보다는 국내 채권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환매 중 재산가치 변동 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일(기준가격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기준가격적용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환매청구 제한 및 환매연기 위험	대량환매의 발생 등으로 인해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유로 인해 수익자의 환매 청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 환매대금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 신고서 제2부 중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크레딧 채권 등 투자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회사채를 포함한 크레딧 채권 등은 중도 매각에 따른 할인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투자신탁에서 환매 대금 등의 마련을 위해 보유 채권을 매각할 경우 투자신탁의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잔존 수익자의 손실로 전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상황의 급변동, 신용등급의 하락 등으로 대량 환매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채권의 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환매 대금 지급 불가능에 따른 환매연기 등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조건부 채권 매도 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환매조건부채권(RP)은 단기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 채권을 다시 매수할 것을 원칙으로 하여 현재 채권을 매도하는 거래계약입니다. 따라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를 통한 레버리지 창출 등의 운용방식으로 채권을 매입할 경우,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대한 기간의 불일치, 업종(섹터)의 불일치 등 미래의 경제 상황에 따라 조달금리가 운용금리보다 높아져 투자신탁 재산의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증권 차입 위험	이 투자신탁의 운용 전략에 따라 증권을 차입할 경우, 차입 자산을 매도(short selling)하여 해당 자산의 반환 시점에 예상과 달리 그 자산의 가치가 급등하게 되면, 매도 시점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함으로 인해 그 차액(매도가-매수가)만큼 투자신탁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실자산 등의 평가 위험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자산 중, 해당 자산 발행사의 부도, 화의신청,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 또는 파산 절차 진행 등으로 인해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곤란하여 부도채권 또는 부실자산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를 거쳐 자산 상각을 하게 되며, 이는 해당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여 투자신탁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자산 상각에 따른 투자자산의 가치는 이 후 발행 사의 회생에 따라 가치가 다시 상승할 수 있으며, 또는 발행사의 청산에 따라 가치가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자산 중 부실자산이 발생했을 경우 환매가 연기될 위험이 있으며, 이 경우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는 부실자산을 나머지 정상자산과 분리하여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된 투자신탁은 부실자산의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환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부해지위험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등의 사유 발생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투자신탁을 전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증권대차 거래 위험	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기준으로 투자위험등급을 측정하게 되며, 투자신탁 자산의 60% 이상을 채권 등에 투자하므로 5등급에 해당되는 낮은 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 투자에 따른 이자율 변동 위험과 발행자 신용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 추후 이 투자신탁이 설정 후 3년이 경과했을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97.5% VaR 모형의 일

간 수익률 최대손실예상액을 기준으로 투자위험 등급을 재산정할 예정이며, 이 경우 투자위험 등급이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위험등급 변경 내역>

해당사항 없음

<위험등급분류기준 -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기준>

위험 등급		상세 설명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 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 위험	•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이하 동일한 위험의 자산을 "고위험자산"으로 칭함)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 위험	•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이하 동일한 위험의 자산을 "중위험자산"으로 칭함)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 위험	•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이하 동일한 위험의 자산을 "저위험자산"으로 칭함)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MMF) • 단기 국공채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주1) 해외투자펀드는 국내펀드 분류기준을 준용하되 환헤지여부, 투자국가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위험등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주2) 상세설명에 명시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는 투자대상 자산 및 투자자의 투자원금 손실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당사의 상품개발위원회가 판단하여 분류합니다.

(주3)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주로 투자하는 재간접(Fund of funds)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주로 편입하고자 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속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주4)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모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등급을 기초로 자 집합투자기구에서 모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편입비율을 고려하여 자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주5) 상기 위험등급 분류는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내부 기준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분류기준으로 판매회사가 투자권유 준칙에 따라 별도로 정한 투자위험등급 분류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의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판매회사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별	클래스 상세	가입자격
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가입자에 대한 자격제한 없음
A-E	수수료선취-온라인	판매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창구를 통한 가입자
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가입자에 대한 자격제한 없음
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판매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창구를 통한 가입자
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펀드,전문투자자 등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납입금액 100억원 이상의 개인, 50억원 이상의 법인 가입자
C-P2(연금저축)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 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C-P2(연금저축)E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 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온라인(On-Line)전용 수익증권
C-P(퇴직연금)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C-P(퇴직연금)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에 한하는 온라인(On-Line)전용 수익증권
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판매회사의 Wrap Account 계좌를 보유한 가입자, 특정금전신탁 계좌를 보유한 가입자

(3) 매입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2영업일(D+1)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나) 오후 5시 경과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1영업일	2영업일	3영업일
D	D+1	D+2
자금납입일 (5시 이전)	기준가격 적용일	
자금납입일		기준가격

(5시 경과후)		적용일
----------	--	-----

(다)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4) 매입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입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당일 17시(오후5시)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5시)경과 후 매입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환매가능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 가능	
	환매수수료 발생	환매수수료 없음
-	-	해당

※ 환매수수료 관련 세부사항은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D)로부터 **2영업일(D+1)**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2영업일(D+1)**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오후 5시 경과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D)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3영업일(D+2)**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1영업일	2영업일	3영업일
D	D+1	D+2
환매청구일 (5시 이전)	기준가격적용일 환매대금지급일	
환매청구일 (5시 경과후)		기준가격적용일 환매대금지급일

(다) 판매회사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4)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환매청구일 당일 17시(오후5시)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5시)경과 후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

여 처리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는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17시 경과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 ①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②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환매를 청구 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회사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 ④ ① 내지 ③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간접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집합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 전환 : 해당 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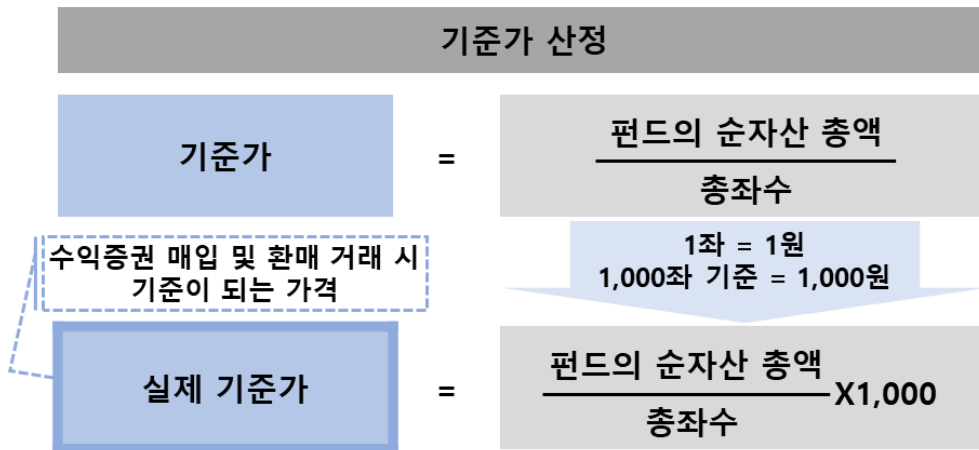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공고일의 직전일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별 기준가격이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유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지하지 아니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eastspring.com/kr), 판매회사·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집합투자기구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법 제238조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는 평가시점(해외증권 시장의 경우 전일의 최종시가)의 최종시가 또는 평가일의 공정가액(신뢰할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을 사용하여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시차가 있는 시장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산의 종류별로 아래의 평가방법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수익자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의 동의하에 이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가 좀 더 공정하게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취득가. 다만, 취득가가 공정한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사의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장내파생상품	해당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전일의 종가)
장외파생상품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일 10일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채권	(위 상장채권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상장채권 포함)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

	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증권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산출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외화표시 유가증권인 상장 주식 및 상장채권	외화표시 유가증권인 상장주식 혹은 상장채권은 해당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가 국내일 경우 당일의 최종시가로, 해외일 경우 해당 국가가 소재하는 유가증권 시장의 전일의 최종시가
외국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의 전일의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의 시장에서 전일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 외화표시 증권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외화표시자산을 한국 원화로 환산하는 환율	평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에서 고시하는 최근거래일의 재정된 매매기준율 즉 재정환율 또는 최종시가. 이 경우 외국환중개회사가 재정환율 또는 최종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전자매체 등을 이용하여 미리 고지한 환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율을 사용하여 평가할 수 있음.

※ 단, 평가일 현재 신뢰할만한 시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즉,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할 수 있다.

(2)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업무

- 구성: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담당임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담당임원, 준법감시인, 운용지원팀장, 그 밖에 회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임직원
- 업무: 집합투자재산 평가업무의 종합의사결정기구로서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의 일관성 유지, 세부 자산의 평가 등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대한 필요사항을 의결합니다.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1)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클래스		선취 판매수수료	후취 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전환수수료
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납입금액의 0.3% 이내	-	-	-
A-E	수수료선취-온라인	납입금액의 0.15% 이내	-	-	-
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	-	-	-
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	-	-	-

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펀드, 전문투자자 등	-	-	-	-
C-P2(연금저축)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	-	-	-
C-P2(연금저축)E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	-	-	-
C-P(퇴직연금)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	-	-	-
C-P(퇴직연금)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	-	-	-
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	-	-	-
지급시기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전환시

※ 선취 및 후취판매수수료는 각 클래스에서 정한 범위 이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가 수수료를 달리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판매회사·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및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될 예정입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클래스		지급비율(연간,%)									
		집합투자 업자보수	판매회사 보수	수탁회사 보수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총 보수	기타비용	총보수 및 비용	동종유형 총 보수	합성총보 수 및 비용 (※투자집합 투자기구조 수포함)	증권 거래비용
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0.0600	0.1000	0.0100	0.0090	0.1790	-	0.1790	0.34	0.1790	-
A-E	수수료선취-온라인	0.0600	0.0500	0.0100	0.0090	0.1290	-	0.1290	0.25	0.1290	-
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0.0600	0.3000	0.0100	0.0090	0.3790	-	0.3790	0.39	0.3790	-
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0.0600	0.1500	0.0100	0.0090	0.2290	-	0.2290	0.25	0.2290	-
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펀드,전문투자자 등	0.0600	0.0100	0.0100	0.0090	0.0890	-	0.0890	-	0.0890	-
C-P2 (연금저축)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0.0600	0.2500	0.0100	0.0090	0.3290	-	0.3290	-	0.3290	-
C-P2 (연금저축)E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0.0600	0.1250	0.0100	0.0090	0.2040	-	0.2040	-	0.2040	-
C-P (퇴직연금)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0.0600	0.2400	0.0100	0.0090	0.3190	-	0.3190	-	0.3190	-
C-P (퇴직연금)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0.0600	0.1200	0.0100	0.0090	0.1990	-	0.1990	-	0.1990	-
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0.0600	0.0000	0.0100	0.0090	0.0790	-	0.0790	-	0.0790	-
지급시기		매3개월 후급					사유 발생시	-	-	-	사유 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 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

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타비용은 다음과 같은 비용을 포함하며, 세부 지출 내역은 펀드 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감사보수, 채권평가보수, 펀드평가보수, 펀드결제수수료, 지수사용료, 해외거래예탁비용, 해외원천납부세액, 보관대리인 보수, 법률자문비용, 부동산감정평가보수 등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모자형투자신탁의 경우 증권거래비용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증권거래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증권거래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증권거래비용은 다음과 같은 비용을 포함하며, 세부 지출 내역은 펀드 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국내주식매매수수료, 국내채권매매수수료, 장내파생매매수수료, 기타매매수수료, 콜중개수수료, swap 매매수수료, 대차거래비용(대차 관련수수료), repo 거래비용(repo 수수료), 해외주식매매수수료, 해외채권매매수수료, 해외수익증권 매매수수료, 해외파생 등 매매수수료, 해외워런트 등 매매수수료 등

주3) 기타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천원)
증권거래비용	-
금융비용	-

주4)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5)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6)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 천원)

클래스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48	67	87	130	258
A-E (수수료선취-온라인)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8	42	57	88	180
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39	79	122	213	480
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3	48	74	129	292
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펀드,전문투자자 등)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9	19	29	50	114
C-P2(연금저축)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개인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34	69	106	185	418
C-P2(연금저축)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개인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1	43	66	115	260
C-P(퇴직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33	67	103	179	40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C-P(퇴직연금)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0	42	64	112	254
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8	17	26	45	101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클래스 S의 경우 보유기간을 3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여 산정하였으며, 후취판매수수료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A형과 C형], [A-E형과 C-E형]의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1년6개월]**, **[약1년6개월]**이나, 이는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일 익영업일에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② 수익자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③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게 귀속됩니다.

※ 펀드내 자산의 평가·매매이익의 결산·분배금 유보로 인해 과세이연 효과가 발생하면서 수익자의 환매청구시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5년 1월 1일 이후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외국납부세액은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외부납부세액 환급 절차가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판매회사 등)가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기구 이익을 지급하는 시점에 수익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수익자별 외국납부세액 공제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 합니다.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 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공제제도	-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금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단,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중 적은 금액에 대해 추가 공제함. * 세액공제 한도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 기준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분리과세한도	1,500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 단, 1,5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 2024년 1월 1일 이후 연금 수령분부터 적용)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 - 가입자의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 분리과세(나이에 따라 변경,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로 적용됩니다.

① 세액공제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단,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세액공제 한도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 기준

②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③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

연금수령, 일시금수령 등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재무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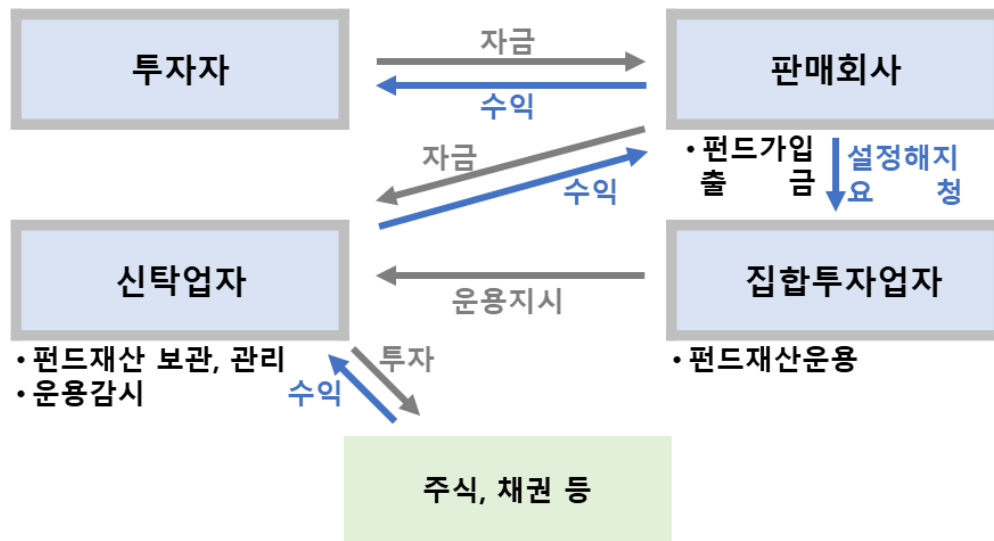
설정 이후 1년 미만 펀드로서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설정 이후 1년 미만 펀드로서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설정 이후 1년 미만 펀드로서 해당사항 없습니다.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사명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여의도동, One IFC) [연락처 : 02-2126-3500, www.eastspring.com/kr]
회사 연혁	2001.02 굿모닝투자신탁운용(주) 설립 2002.10 Prudential Corporation Holdings Limited로 대주주변경 2002.11 PCA투자신탁운용(주)로 사명 변경 2010.07 PCA자산운용(주)로 사명 변경 2012.02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주)로 사명 변경
자본금	327억원
주요주주현황	Prudential Corporation Holdings Limited 100%

※ 영국 프루덴셜 그룹은 영국의 세계적인 금융서비스 그룹으로 보험·자산운용 및 금융서비스를 직접 혹은 자회사와 계열사 등을 통하여 지난 170년간 전 세계에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에 본사를 둔 프루덴셜(Prudential Financial, Inc.)과는 아무런 제휴 관계가 없습니다.

나. 주요 업무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해지/투자신탁의 운용·운용지시/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백만원)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계정과목	FY2023	FY2022	계정과목	FY2023	FY2022
자산총계	76,989	82,249	1. 영업수익	20,439	22,374
1. 현금 및 예치금	16,412	7,220	2. 영업비용	17,381	19,667
2. 유가증권	36,074	36,929	3. 영업이익	3,058	2,707
3. 종속기업	590	0	4. 영업외수익	20	108
4. 대출채권	0	0	5. 영업외비용	23	27
5. 유형자산	2,462	3,151	6. 경상이익	3,056	2,788
6. 기타자산	21,451	34,949	7. 특별이익	0	0
부채 및 자본총계	76,989	82,249	8. 특별손실	0	0
1. 예수부채	0	0	9. 법인세차감전 순이익	3,056	2,788
2. 기타부채	8,067	13,101	10. 법인세비용	1,258	691
3. 부채총계	8,067	13,101	11. 당기순이익	1,798	2,096
4. 자본금	32,700	32,700			
5. 이익잉여금	36,247	36,449			
6. 자본잉여금	190	190			
7. 자본조정	-37	-37			
8.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179	-155			
9. 자본총계	68,922	69,147			

라. 운용자산 규모

(2024.11.30기준, 단위: 억 원)

구분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단기금융	총 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계약형	재간접형	파생형	기타					
수탁고	10,482	11,140	1,297	0	362	129	0	462	287	0	2,536	26,694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수탁회사 : 해당 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해당 사항 없음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우리은행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회현동1가) 연락처 : 02-2002-3000
회사 연혁	www.wooribank.com

나. 주요 업무**(1) 주요 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 수입
-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의무]**

- ①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운용지시 등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26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신한펀드파트너스주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연락처: 02-2180-0400
회사 연혁 (홈페이지 참조)	www.shinhanfundpartners.com

나. 주요 업무

(1) 주요 업무

기준가격 산정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산정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위반 및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한국자산평가	NICE피앤아이	KIS채권평가	에프앤자산평가
주소 및 연락처	주소: 서울특별시 율패로88(운니동 98-5) 연락처: 02-399-3350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 (여의도동) 연락처: 02-398-3900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여의도동) 연락처: 02-3215-1400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29(인사동) 연락처: 02-721-5300
회사 연혁 (홈페이지 참조)	www.koreaap.com	www.nicepricing.co.kr	www.bond.co.kr	www.fnpricing.com

나. 주요 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사유 중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합니다)한 것으로 봅니다.
 - 1) 수익자에게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

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로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연기수익자총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도 법 제190조 제6항의 수익자의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 및 간주의결권행사에 관한 내용을 준용합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합니다.

-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5-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목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9) 법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단,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은 제외)
- 10)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부터 20일 이내에 수익

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이익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 됩니다.
-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취득자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계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3)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임의해지

(1)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2)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3)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5)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 및 판매회사와 협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 (2) (1)의 3) 및 4)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집합투자업자 (www.eastspring.com/kr)·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판매회사를 통해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3)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
-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나, 투자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가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우편발송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1)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하 '기준일')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2)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3)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4)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3)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4)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

용보고서는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집합투자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3)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 4) 법제247조제5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확인해야 되는 사항
- 5) 그 밖에 법시행령제270조제2항에 정해진 사항

(4) 기타 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5-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목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www.eastspring.com/kr)·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판매회사를 통해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 5) 투자설명서의 변경
-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양수
 -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 8)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단,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에 한함
 - 9)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단,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 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가. 법시행령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지상권, 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 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 변경
 - 라.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 11)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명,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결권등 법제87조제2항및제3항에 따라 주요 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 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다. 투자증권업자 선정 기준

구 분	내 용
<투자증권거래>	- 선정시 고려사항 - 운용지시가 효율적으로 체결될 수 있을 것 - 중개회사가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거래유형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기구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나 수익이 주어진 여건하에 서 가장 유리한 회사 -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고려 - 매매대가 이익에 관한 사항 - 특정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매매대가 이익은 해당되는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되어 사용될 것 - 매매대가 이익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중개수수료의 할인 이외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음 -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중개회사가 서비스 제공자에 직접 지불하여야 함 [매매대가 이익은 다음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는 등 제한이 따름] - 가.회사 경영관련 비용 - 나.리서치와 무관한 정보 및 시스템 제공 - 다.마케팅비용 - 라.조사분석 세미나 관련 여행비용(숙식비등) - 마.펀드매니저는 매매관련 수수료 및 매매대가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과도하게 유가증권등의 매매주문을 하여서는 아니됨
<장내파생상품거래>	<투자증권거래>의 경우와 같음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구 분	내 용
투자주체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코리아(주)
투자목적	집합투자기구 운용에 대한 책임성 제고 및 신뢰 확보를 위해 투자자·집합투자업자간 집합투자기구 성과 공유장치 마련
투자시기	최초 설정일
투자금액	7억원 ※금융투자업규정 제4-54조의2 제2호에 의해 고유재산 투자금이 집합투자업자의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이상(4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4억원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함)인 집합투자기구
투자기간	최초 설정일부터 최소 3년 이상

투자금 회수계획 등	일시 환매로 일반 투자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회수할 예정 - “투자기간 종료 이후에는 집합투자업자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투자기간 종료 1개월 이전에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 공시 - 투자기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2회 이상 분할하여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금액이 투자신탁 수탁고의 5% 미만인 경우에는 일시 회수 가능 - 분할 회수는 회차별로 1개월 이상의 시차를 두며, 1회당 회수금액은 투자금액의 50% 이내로 함 - 투자금 환매시에는 자산운용보고서상 환매 결과를 기재하고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 공시
------------	---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해당 사항 없음

용 어	내 용
개방형 (집합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환매청구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금리스왑	금리스왑은 금리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금융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 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때 원금은 바꾸지 않고 이자지급의무만을 바꾸며, 금리스왑은 보통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금융투자협회 코드	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집합투자기구의 명칭뿐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기준가격	집합투자기구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집합투자재산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집합투자기구의 잔존 집합투자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 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레버리지 효과	파생상품을 이용한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모자형 (집합투자기구)	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자집합투자기구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외의 다른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것과 자집합투자기구 외의 자가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자집합투자기구와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동일합니다.
보수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집합투자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집합투자업자 보수, 판매업자 보수, 신탁업자 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물환거래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일정액의 외국통화를 일정한 환율로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래로 환헤지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설정	집합투자계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집합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수익자총회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 회의를 일컫는 말입니다.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 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됩니다. 만약 이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20 일 이내에 집합투자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탁고	집합투자기구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사채권자에게 사채 발행 이후에 기채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 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 담보로 맡기고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해 쪼개서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특수사채의 일종으로,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종류형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내에서 투자자그룹(클래스)별로 판매보수와 수수료가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집합투자기구로 간주되어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방법은 동일합니다.
증권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 (부동산 관련 주식 또는 채권 및 특별 자산을 제외하며, 제외대상 자산 외의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지분증권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집합투자	2 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에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증권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추가형 (집합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매입신청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특별자산(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 자산을 말한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집합투자기구 매입 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해지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집합투자재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한 이후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에는 일정기한까지 환매가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투자자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한 이후 단기간 이내 또는 만기 이전에 환매할 경우 수익금 또는 환매대금의 일정 수준 범위 이내에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집합투자재산 운용의 안정성과 환매 시 발생하는 비용 등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귀속됩니다.
환매조건부채권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환헤지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는 대부분 외국통화로 자산을 사들이게 되며, 운용기간 중에 환율이 하락(원화강세)하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선물환 계약(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 등을 이용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제거하는 환헤지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